####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-138호

#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(공시송달)

「보험업법」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, 과태료 금액,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**2023년 5월 16일** 금융위원회위원장

### 1. 공시송달 대상자

성 명	주민/법인등록번호	주 소	
이승민	910921-*****	인천광역시 연수구	
김동원	830329-*****	서울특별시 용산구	

- 2. 서류의 명칭 :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
- 3. 서류의 내용:

#### 가.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

처분 대상자	처 분 원 인	근거 법규	처분내용
이승민	㈜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승민은 2018.12.20.~2019.2.28. 기간 중 □□□□□□□□보험㈜ '(무)⑩ ⑩⑩⑪⑪⑪보험'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(초회보험료 ▲.▲백만원, 수입수수료 ▽.▽백만원)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사실이 있음	○ 舊「보험업법」 제97조 및 제209조 ○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제16조, 제17조 및 제18조	과태료 210만원
김동원	㈜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동원은 2018.5.15.~2018.6.25.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□□□□□보험㈜ '무⑪⑪⑪⑪⑪⑪⑪⑪⑪⑪⑪⑪⑪⑪⑫□□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	○ 舊「보험업법」 제97조 및 제209조 ○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제16조, 제17조 및 제18조	과태료 20만원

#### 나. 유의사항

- □ 귀하는 위반사실,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,
  -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송달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 위원회 보험과(전화번호 02-2100-2965, 전자우편: soonsiee@korea.kr, 팩스번호: 02-2100-2933)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,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.
- □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, 의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- 다 음 -

- o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
- o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·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
- o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o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 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- o 미성년자
- □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 위규제법」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%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  -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,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- □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.
- **4.**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(02-2100-2965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